

# 2022년 제3차 [예비]사회적기업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수진기업 모집 공고

## [① 자율형-지속성장, 공동 / ② 협업활성화 지원]

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고 제2022 - 0143호

(예비)사회적기업의 경영역량 강화, 소셜 임팩트 제고 등 경쟁력 강화 지원과, 연대와 협력을 통한 공동의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「(예비)사회적기업 전문컨설팅 지원사업」의 수진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22. 7.

한 국 사 회 적 기 업 진 흥 원 장

| 유형       | 지속성장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공동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협업활성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지원<br>내용 | 경영·기술 전 분야의<br>심화된 경영과제와 현안<br>문제 해결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동종·유사 업종 또는<br>지역 공동의 경영 현안<br>해결지원    | 연대와 협력을 통한<br>사회적기업 공동의<br>성장 전략 구축지원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1개 기업<br>컨설팅 비용 지원<br>(비용 제한 없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개 이상 기업<br>공동 컨설팅 비용 지원<br>(비용 제한 없음) | 2개 이상 기업<br>공동 컨설팅 비용+<br>연대협력 사업비 지원<br>(총 2천만~4천만 범위) |
| 선정<br>규모 | 총 예산 250,000,000원 이내<br>(자율형 및 협업활성화 각 유형별 세부 선정 규모는<br>신청규모 및 심사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심의·확정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공고<br>기간 | 공고일 ~ 2022.07.28.(목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신청처      | www.seis.or.kr (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※ 컨설팅 유형별 상세 신청 개요는 해당 목차별 세부 내용 참조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I. 자율형(지속성장, 공동) 컨설팅 .....   | 2p  |
| II. 협업활성화 지원 컨설팅 .....       | 10p |
| III. 선정이후 행정사항 및 기타 안내 ..... | 17p |
| [참고] 컨설팅 신청 관련 참고 사항 .....   | 19p |

# I. 2022년 제3차 (예비)사회적기업 전문컨설팅 지원사업(자율형-지속성장, 공동) 수진기업 모집

## 1

## 전문컨설팅 지원사업(자율형) 사업 개요

### 가. 사업 목적

- (예비)사회적기업 수요에 맞는 우수한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지속가능한 조직으로 자립경영 할 수 있도록 지원
  - (자율형 컨설팅) 사회적기업이 다양한 경영 현안 해결을 위한 컨설팅 주제와 컨설팅기관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지원 신청
  - ('22년 추진방향) 전략, 판로, 자금연계 등 기존 컨설팅 주제와 함께 새로운 경영 환경 대응 주제를 적극 발굴하고, 사전진단과 컨설팅 전후 연계 강화를 통한 사업 활용도 제고
    - <sup>1)</sup>디지털전환, <sup>2)</sup>저탄소·환경, <sup>3)</sup>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서비스 제공 확대, <sup>4)</sup>소셜 임팩트 측정·고도화, <sup>5)</sup>ESG 진단·개선 등
    - \* 4) 소셜 임팩트 측정·고도화: SVI 측정사업과 별개로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고유한 소셜 임팩트 관련 지표 개발 및 고도화
    - 사전진단 상시 운영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현안 진단, 주제 선정, 기관 매칭에 대한 부담 완화를 지원(상세 내용 3p, [참고6] 참조)
    - 진흥원 내외부 자원 또는 유관 사업간 전후 연계를 통해 컨설팅 성과를 극대화 및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지원

### 나. 지원 내용

- 신청기업의 수요에 따라 다양한 경영상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진흥원의 컨설팅기관 Pool을 활용하여 맞춤형 컨설팅 제공
  - 신청기업(수진기업) 규모에 따른 구분
    - (지속성장형) 단일 기업의 경영/기술 전 분야에 대하여 신청 기업의 경영 현안에 대한 집중적 컨설팅 지원

- (공동형) 동종·유사 업종 또는 지역의 10개 이하 사회적기업들이 공동으로 규모의 경제 및 연대전락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

\* <협업활성화 지원 컨설팅> 10p 참조, 컨설팅 비용과 공동 사업비 지원

#### ○ 수진기업 신청 전 준비 절차

- (자율매칭) 사회적기업이 자율적으로 컨설팅기관을 사전에 섭외하여 수행계획서를 작성, SEIS를 통해 지원사업을 신청
- (사전진단) 컨설팅 주제 선정 및 컨설팅기관 섭외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전문 진단을 거쳐 지원사업 신청을 준비(3p, 17p 참조)

#### ○ (지원내용) 금액의 한도 없이 컨설팅 과제 추진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, 기업당 연 1회, 누적 5회까지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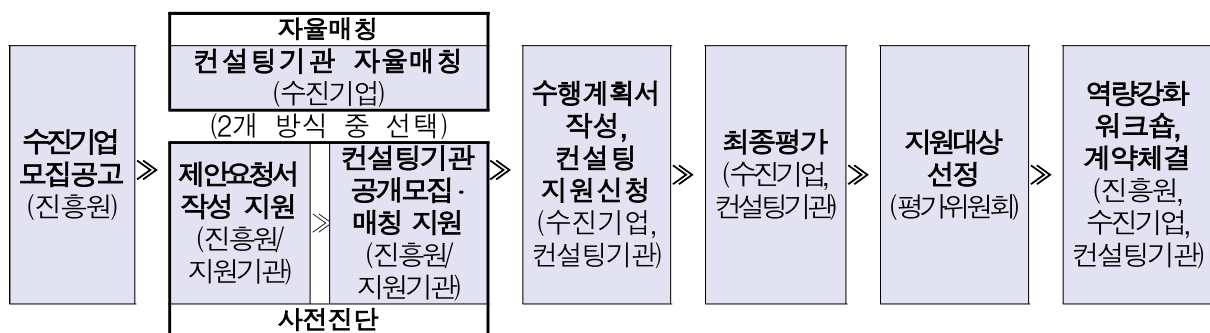
※ 단, 예비사회적기업은 연간 1,000만 원 이내 지원(최대 지원 횟수는 동일)

※ 1회 이상 컨설팅을 지원받는 기업일 경우 이전에 지원받은 과제와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을 수 없음

※ '22년 표준형, 자율형, 협업활성화 컨설팅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음

#### ○ (연계사업 정보 제공) 컨설팅 이후 연계 가능한 자치단체, 부처 사업 정보 제공을 통해 컨설팅 이후 활용도 제고를 지원

#### <자율형 컨설팅 신청 및 선정 절차 개요>



□ 컨설팅기관과 매칭을 완료하여 컨설팅 수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
- 컨설팅 주제 선정, 기관 선택 등 준비절차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 “사전진단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(진단신청은 선택 사항)

<(예비)사회적기업 전문컨설팅 사전진단 지원 안내>

- **(사전진단이란?)** 전문컨설팅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나 **주제 선정, 컨설팅기관 매칭 등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** 대상 전문기관의 진단 서비스를 제공
    - 1) **정확한 기업 문제 진단, 2) 컨설팅과제 명확화, 3) 적합한 컨설팅기관 매칭**을 지원받고자 하는 (예비)사회적기업 대상 진단 제공
    - 사전진단은 **별도의 비용부담, 선정절차 없이** 신청한 모든 기업에게 제공
  - **(사전진단 신청방법)** 별도 사전진단 신청 공고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
    - 진흥원 홈페이지([www.socialenterprise.or.kr](http://www.socialenterprise.or.kr)) 공지사항을 통해 공고문 확인
      - \* 공고명: “2022년 (예비)사회적기업 전문컨설팅 지원사업(자율형) 사전진단 신청 공고”
    - **(공고 바로가기(상세보기 클릭))** [상세보기 \(socialenterprise.or.kr\)](http://socialenterprise.or.kr)
      - \*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 진흥원 홈페이지 > 소식·자료 > 공지사항 > ”사전진단“ 검색
    - **(신청절차)** 해당 공고에서 “**사전진단 신청서**”를 통해 간단히 기업 수요에 대해 작성하여, 공고문에 안내된 온라인 신청 주소를 통해 제출
    - **(신청서 작성)** 컨설팅 필요성, 기대효과에 대해 간단히 작성하여 신청
- ※ 사전진단은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한 필수 절차가 아닙니다.
- ※ 신청서 항목은 본 공고문의 [참고 6]을 참조하여 주시고, 신청 시 사전진단 공고에 첨부된 서식을 활용하여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
## 2

## 전문컨설팅 지원사업(자율형) 수진기업 공모 내용

☐ (선정규모) 공고문 1p 참조

☐ (지원대상)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

| 구 분   | 지 원 대 상          | 컨설팅 내 용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지속성장형 | (예비)사회적기업        | 경영·기술 전 분야의 심화 과제        |
| 공동형   | 2~10개의 (예비)사회적기업 | 동종/유사 업종 또는 지역 공동의 경영 현안 |

○ 세부 선정 과제의 수는 신청 규모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전문컨설팅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 한도 내에서 최종 결정함

○ (우대 가점) 최대 5점 부여(공동형은 적용하지 않음)

| 점수 | 가점 항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금융 지원사업에 신청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신청기업</li> <li>■ 직전년도 매출액이 15억원 이상인 신청기업</li> <li>■ 유급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신청기업</li> <li>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지 1년 이내의 신청기업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직전년도 사회적기업 자율경영공시(기본·확장공시)에 참여한 신청기업</li> <li>■ 광역 및 지자체 사회적경제 협력기관에서 포상을 받거나 공모에 선정되는 등 우수성을 인정받은 기업</li> <li>■ 자율형 전문컨설팅 수진 이력이 없는 신청기업</li> <li>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공고하는 SVI 측정에 참여한 이력이 있거나 참여 중인 신청기업</li> </ul> |
| 3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진흥원 혹은 사회적경제 협력기관에서 주관한 공신력 있는 진단과정을 거쳐 발굴된 컨설팅 과제를 보유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기업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\* 단, 우대가점 서류는 신청·접수 마감일 유효한 서류에 한해 인정하며, 신청 시 해당사항에 표기하지 않은 가점은 추후 인정되지 않음

\*\* 3점 해당사항이 있는 기업은 “【별지 제3호 서식】 전문컨설팅 과제 발굴 확인서”를 해당 유관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아 첨부

☐ 지원 조건

| 구 분   | 지원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업부담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컨설팅 수행기간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지속성장형 | 제한 없음<br>(단, 예비사회적기업 최대 1,000만 원) | 계약(신청)금액에 따라 10~40%<br>(세부 계산방법 산출방식 참조) | ~11.18.  |
| 공동형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
※ 신청기관은 2022년 11월 18일 이전까지 컨설팅 과업이 종료되는 일정으로 수행계획과 예산 규모를 수립하여야 함

○ 사업 예산 및 자부담 산출방식

| 총사업비                 | 자부담 비율 | 최대 기업부담 | 산출 방식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500만원 이하             | 10~40% | 50만원    | 컨설팅 계약금액 × 10%                 |
| 500만원 ~ 1,500만원 이하   |        | 250만원   | {50만원 + (500만원 초과금액 × 20%)}    |
| 1,500만원 ~ 2,500만원 이하 |        | 550만원   | {250만원 + (1,500만원 초과금액 × 30%)} |
| 2,500만원 초과           |        | 산출식에 따름 | {550만원 + (2,500만원 초과금액 × 40%)} |

○ (예산 산출) “컨설턴트 등급별 단가 × 컨설팅 투입일(MD)”의 총 합계

※ 컨설팅 과제 총 비용에 비례하여 기업 부담금액이 달라짐을 인지하여 반드시 별첨하는 “자부담금액 계산기.xls” 사용하여 자부담 금액을 확인

※ 단, 긴급재난의 직·간접적인 피해로 경영상 애로가 발생한 기업의 경우 재난이 발생한 시점부터 3년 내에 1회 기업부담금 면제 가능

-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둔 기업으로 시·군·구·읍·면장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
-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둔 기업으로 간접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권역별통합지원기관 또는 지역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한 경우
- 기타 진흥원장 또는 경영컨설팅평가위원회에서 면제를 결정 할 경우

□ (신청·접수 마감) **공고일 ~ 7. 28. (목) 17:00 까지**

○ (방법) 온라인 신청(www.seis.or.kr)

※ 신청 방법은 “컨설팅 신청 매뉴얼.pdf”(별첨) 참조, 신청 마감일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신청 마감 2~3일 전 신청 요망

○ (유의사항) 사회적기업은 신청 전에 진흥원에 등록된 컨설팅 기관 Pool에서 컨설팅기관을 섭외하여 매칭 하여야 함

○ (구비서류) 신청기업이 통합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시스템을 통해 신청기업, 컨설팅기관의 서류를 취합하여 제출

| 서류 종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신청기업                       | 컨설팅기관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1. 컨설팅 신청서<br>【별지 제1호 서식】         | 온라인 SEIS 작성<br>(별도 파일첨부 ×) | 해당 없음 |
| 2. 신청기업 컨설팅 수요 기술서<br>【별지 제2호 서식】 | 필수                         | 해당 없음 |
| 3. 전문컨설팅 과제 발굴 확인서<br>【별지 제3호 서식】 | 해당 있을 시                    | 해당 없음 |
| 4. 수행계획서<br>【별지 제4호 서식】           | 필수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

| 서류 종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신청기업                   | 컨설팅기관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5.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<br>【별지 제5-1호, 제5-2호 서식】 | 필수                     | 필수    |
| 6.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<br>【별지 제6-1호, 제6-2호 서식】 | 필수                     | 필수    |
| 7.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<br>사업자등록증 1부            | 필수<br>(공동형 참여기업 전체)    | 해당 없음 |
| 8. 최근 2개년도 결산재무제표<br>(최근 결산 완료 회계연도부터) | 필수<br>(공동형 총괄기업)       | 해당 없음 |
| 9. 우대 가점 관련 증빙 서류 사본<br>(공동형은 가점 미적용)  | 해당 있을 시<br>(공동형 해당 없음) | 해당 없음 |
| 10. 공동형 참여기업 명단<br>【별지 제7호 서식】         | 공동형에 한함                | 해당 없음 |

※ 1개 이상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압축(zip)하여 SEIS의 해당 칸에 첨부  
 ※ 구비서류에 대한 추가 설명은 [참고 5]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3

## 전문컨설팅(자율형) 신청 시 유의사항

### □ 컨설팅 수행기관 선정 및 수행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

- 컨설턴트 1일 기준 단가에는 인건비, 운영비, 여비, VAT를 포함한 각종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이 모두 포함된 금액임
- 컨설팅 과제책임자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하는 책임자로, 컨설팅 기관 소속의 상근 컨설턴트(2등급 이상)가 담당하여야 함
- 컨설팅 수행은 수진기업에서의 현장활동이 전체 투입일수의 70%이상이어야 하며, 2명 이상의 컨설턴트가 동일 일자에 동일 내용으로 컨설팅을 수행한 경우, 최상위 등급 컨설턴트를 제외한 그 외 컨설턴트 MD는 불인정(단, 수진기업과 협의를 통해 현장 투입일의 50%(전체 투입일 35%)까지 비대면 화상 컨설팅 활용 가능)
- 컨설팅기관은 참여컨설턴트가 사업연도 내 컨설팅 지원사업의 투입 일수가 총 120일을 초과할 수 없음을 고려하여 투입인력 등을 조정하여야 함
- 참여 컨설턴트는 1일 1개 수진기업에 대해서만 컨설팅을 수행하여야 함
- 과제책임자는 과제별 총 투입일수의 최소 30% 이상 참여하여야 함.
- 비상근 컨설턴트는 과제별 총 투입일수의 40% 이내에서 인정  
(단, 공동형 컨설팅의 경우 평가위원회 사전승인을 거쳐 40% 초과하여 인정가능)
- 참여 컨설턴트는 본 사업에 선정된 이후 진흥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단, 아래의 경우 면제 가능
  - 진흥원 컨설팅 사업 수행실적이 3건 이상인 컨설팅기관 중 평가 결과가 A등급 이상인 기관 소속 컨설턴트(신규 등록 컨설턴트 제외)
  - 직전년도 컨설팅 수행결과 종합 점수가 상위 10%인 컨설팅기관 소속 컨설턴트(신규 등록 컨설턴트 제외)
- 교육자료 개발, 매뉴얼 개발, 타 지원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, 단순 유통채널 확보, 기초컨설팅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내용 등 일부 주제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. 다만, 평가위원회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

## □ 지원제외 대상

- 신청 컨설팅 내용이 이미 지원받은 컨설팅 내용과 유사·중복으로 판명된 경우
- 당해연도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에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수진기업
- 당해연도 컨설팅기관으로 수행 중인 경우
- 사업 운영지침 제6조에 따른 지원 한도를 초과한 기업(최대 5회)
- 변호사, 노무사, 회계사, 변리사, 지도사 등 전문자격자 또는 컨설팅기관이 관련 용역 서비스 계약을 기 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하거나 활용하는 경우
-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 중인 신청기업
- 신청기업 및 컨설팅기관(컨설턴트)이 허위로 수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
- 컨설팅 기간 내에 지정 기한이 종료되는 예비사회적기업
- 타 정부지원사업에 유사 또는 동일한 내용의 컨설팅을 지원받은 경우
-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
  - 가) 기업의 부도, 화의, 법정관리중인 기업
  - 나)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
  - 다)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, 휴·폐업중인 기업
  - 라)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
  - 마) 단, 위 각목에 해당하더라도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배제하지 아니함

## 4

### 전문컨설팅(자율형) 수진기업(지원대상) 선정 절차

## □ 선정 일정

- 신청한 컨설팅 주제 및 과업에 대하여 신청기업과 컨설팅기관의 책임자가 참여하는 최종평가(PT평가)를 거쳐 수진기업 선정 실시
  - ※ 공고 종료 후 1주 내외에 PT평가 실시 예정(구체적 내용 신청기업 개별 추가 안내)
  - ※ 단, 지원규모에 따라 최종 PT평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서면평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PT평가 일정 조정 시 별도 추가 안내 예정
  - ※ 최종 PT평가는 온라인 진행을 원칙으로 하며, 구체적 안내는 별도 공지
- (결과발표) 심사 결과는 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발표
- (유의사항) 평가 시 사회적기업(총괄책임자)과 컨설팅기관(과제 책임자)이 공동으로 배석하여야 하며, 부득이한 경우 총괄책임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참석하여 발표
  - ※ 선정평가 시 사회적기업의 대표(또는 지정한 대리인)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한 경우와 발표를 하지 않은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## □ 선정 방법

- (최종선정) 평가위원회는 당해 연도 지원예산 규모 및 신청기업 수 등을 고려하여 종합 평점(최종평가 점수+우대가점) 고득점 순위에 따라 수진기업(지원 대상)을 선정함
- 최종 선정 과정에서 평가위원회 의결에 따라 컨설팅 내용 및 기간, 투입인력 등을 고려하여 예산 규모 등이 조정될 수 있음
- 평가위원회 의결에 따라 전체 지원 규모에 도달하지 않는 수량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추가 공고를 실시할 수 있음

## ○ 선정 기준(표)

| 평가항목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평가지표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배점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신청기업<br>(사회적<br>기업) | 목적 및<br>추진의지<br>(30) | 수진기업의 컨설팅 수요의 명확성             | 10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컨설팅 수요에 따른 컨설팅 목표 및 방향의 적절성   | 10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대표자(총괄책임자)의 컨설팅 추진의지의 확고성     | 10  |
|                     | 결과의<br>활용가능성<br>(10) | 컨설팅 사업 후 컨설팅 결과물의 활용 의지 및 가능성 | 10  |
|                     | 소 계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0  |
| 컨설팅<br>기관<br>(컨설턴트) | 수행방안<br>(25)         | 수진기업 현안에 따른 문제점 및 환경 분석의 적절성  | 10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현 수준 대비 컨설팅 이후 성과목표(KPI) 적절성  | 5 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개선방향 및 컨설팅 방법론 제시의 부합성 및 전문성  | 5 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컨설팅 수행 단계별 세부 진행계획의 적절성       | 5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사업관리방안<br>(15)       | 컨설턴트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역할 분담의 적절성   | 10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컨설팅 수행 관리 방안 및 전략의 효율성        | 5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사업예산<br>(5)          | 목표 및 계획 대비 사업예산(투입일) 산정의 적정성  | 5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사업완료<br>(15)         | 컨설팅 성과의 실현가능성과 기대효과의 구체성      | 5 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컨설팅 이후 사업연계방안 및 결과물 활용방안의 적정성 | 10  |
|                     | 소 계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0  |
| 총계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 |

## II. 2022년 제3차 (예비)사회적기업 협업활성화 지원 컨설팅 수진기업 모집

### 1

### 협업활성화 지원 컨설팅 사업 개요

#### 가. 사업목적

- (예비)사회적기업들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 컨설팅을 통해 연대와 협력 기반의 경영 전략 구축 지원
  - 참여기업들 간의 명확한 목표 공유, 역할 및 책임 배분 등 협업 내실화를 지원하여 실효성 있는 전략 구축 지원

#### 나. 지원 내용

- 2개 이상 (예비)사회적기업 간 연대·협력을 통한 공동 사업 전략 구축을 위한 공동 컨설팅 지원
  - 다수의 (예비)사회적기업이 공동 사업 및 전략을 구성하여 실효적인 협업으로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을 지원
    - 협업 구축과 더불어 명확한 목표와 장기 비전 수립, 역할과 책임 배분 등 협업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과제 적극 발굴 예정
    - \* 협업사업 예시: 공동 사업 구축/운영, 모델 복제 및 확산, 사회적가치 제고 등
  - 기존에 협업 활동 경험이 있는 네트워크가 컨설팅 및 시범 사업을 통해 고도화를 도모하는 경우 선정심사 시 우대
  - \* 업종·지역 네트워크 활동, 공동사업 활동 경험이 있거나 활동을 추진 중인 기업 우대, 단, 타 지원사업에서 지원받는 사업내용과 동일한 경우 제외
- (컨설팅기관)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(SEIS)에 등록 및 승인이 완료되어 전문컨설팅 수행이 가능한 기관
  - SEIS 등록된 모든 컨설팅기관 참여 가능,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경제 유관기관\*으로 등록된 컨설팅기관 참여 장려
  - \* 정관상에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경제 지원을 설립 목적·주요 사업으로 명시한 법인(사업운영지침 제24조 ① 3.)으로, SEIS에 등록을 완료한 기관

- (연대협력 사업비 지원) 컨설팅 수행 중 협업 사업의 구체화, 시범 운영, 참여 기업 역량 강화 등에 대한 사업비 지원
  - 신청기업 및 컨설팅기관은 총 사업비의 50%를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연대협력 사업비로 편성하여 하고,
  - 최종 컨설팅 지원 협약 종료 전까지 계획한 연대협력 사업의 성과물을 도출하여야 함(제품 및 서비스, 공동 활동의 성과 등 도출)
- \* 예시: 수진기업 간 네트워킹 및 역량강화, 홍보 활동 성과, 공동사업 개발/발굴에 필요한 연구조사 성과, 공동 상품 및 서비스 도출 등
- (지원한도) 컨설팅 과제당 2,000만 원~4,000만 원 이내
  - 사업비 총액은 VAT를 포함한 금액이며, 본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산출된 신청기업(수진기업)의 자부담 금액을 포함함
  - 총 사업비는 컨설팅 비용과 연대협력 사업비로 구성
- (연계사업 정보 제공) 컨설팅 이후 연계 가능한 자치단체, 부처 사업 정보 제공을 통해 컨설팅 이후 활용도 제고를 지원

**<협업활성화 지원 컨설팅 추진 절차>**

| 사전상담                | 신청·접수       | 선정심사              | 계약체결             | 착수 워크숍              | 모니터링·평가          | 사업비 정산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컨설팅 적합유형, 주제 등 상담지원 | » 사전 자율매칭   | » 신청기업/컨설팅기관 대면평가 | » 컨설팅 수행 협약      | » 사업 안내 및 컨설팅 활용 교육 | » 모니터링/완료점검/최종평가 | » 연대협력 사업비 사용 결과 점검 |
| 진흥원                 | 신청기업, 컨설팅기관 | 평가위원회             | 수진기업, 컨설팅기관, 진흥원 | 수진기업, 컨설팅기관         | 진흥원, 지원기관        | 진흥원, 기업·기관          |

## 2

## 협업활성화 지원 컨설팅 수진기업 공모 내용

□ (선정규모) 공고문 1p 참조

□ (지원 대상) 2개 이상의 (예비)사회적기업이 공동으로 참여

- 기업 중 SEIS 등록 등 행정절차를 총괄할 총괄기업을 지정하여야 함
- 세부 선정 과제에 수는 신청 규모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전문컨설팅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 한도 내에서 최종 결정함(1p 참조)

□ (지원조건) 인증 사회적기업 또는 지정 예비사회적기업

| 구 분     | 지원금            | 기업부담비율                 | 컨설팅<br>수행기간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사회적기업   | 제한 없음          | 계약(신청)금액에 따라<br>10~40% | ~11.18.     |
| 예비사회적기업 | 최대 1,000만 원 이내 | (세부 계산방법 산출방식 참조)      |             |

※ 신청기관은 2022년 11월 18일 이전까지 컨설팅 과업이 종료되는 일정으로 수행계획과 예산 규모를 수립하여야 함

○ (예산 산출) 컨설팅 비용 50% + 연대협력 사업비 50% 구성

\* 산출식에 따른 계산 편차를 고려하여 5% 이내 구성비 변동 가능

- (컨설팅 비용) “컨설턴트 등급별 단가×컨설팅 투입일(MD)” 총 합계

- (연대협력 사업비) “【별첨】 협업활성화 지원 컨설팅 사업관리 기준”에 따라 지정된 분류 내에서 집행 항목을 구성

\* 컨설팅기관은 연대협력 사업비의 정산 내역 및 증빙자료를 상시 관리 하고, 진흥원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정산을 실시하여야 함

- 총액과 컨설팅 비용, 연대협력 사업비 구성 후 기업별 자부담 금액을 산출(아래 내용 참조)

#### <사업비 산출 예시>

<사례1> 총 사업비 2,000만원, 참여기업 수 10개소

- (기업별 사업비) 2,000만원 ÷ 10개소 = 200만원
- (기업별 자부담금) 200만원 × 10% = 20만원
- (총 자부담금) 20만원 × 10개소 = 200만원 → **총 자부담율 10%**

<사례2> 총 사업비 3,000만원, 참여기업 수 4개소

- (기업별 사업비) 3,000만원 ÷ 4개소 = 750만원
- (기업별 자부담금) (500만원×10%) + (250만원×20%) = 100만원
- (총 자부담금) 100만원 × 4개소 = 400만원 → **총 자부담율 13%**

※ <참고> 기업별 자부담금 산출방식

| 기업별 사업비              | 비율  | 산출방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최대 자부담금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500만원 이하             | 10% | 사업비 × 10%                      | 50만원    |
| 500만원 ~ 1,500만원 이하   | 20% | {50만원 + (500만원 초과금액 × 20%)}    | 250만원   |
| 1,500만원 ~ 2,500만원 이하 | 30% | {250만원 + (1,500만원 초과금액 × 30%)} | 550만원   |
| 2,500만원 초과           | 40% | {550만원 + (2,500만원 초과금액 × 40%)} | 산출식에 따름 |

- ※ 반드시 별첨하는 “자부담금액 계산기.xls”를 사용하여 자부담 금액을 확인
- ※ 신청기업(수진기업) 간에 협의에 따라 기업별 부담 비율을 달리할 수 있음
- ※ 단, 긴급재난의 직·간접적인 피해로 경영상 애로가 발생한 기업의 경우 재난이 발생한 시점부터 3년 내에 1회 기업부담금 면제 가능

-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둔 기업으로 시·군·구·읍·면장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
-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둔 기업으로 간접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권역별통합지원기관 또는 지역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한 경우
- 기타 진흥원장 또는 경영컨설팅평가위원회에서 면제를 결정 할 경우

□ (신청·접수 마감) **공고일 ~ 7. 28. (목) 17:00 까지**

○ (방법) 온라인 신청(www.seis.or.kr)

- ※ 신청 방법은 “컨설팅 신청 매뉴얼.pdf”(별첨) 참조, 신청 마감일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신청 마감 2~3일 전 신청 요망
- ※ 참여기업 중 **총괄기업의 계정으로** SEIS에 로그인하여 신청

○ (유의사항) 사회적기업은 신청 전에 진흥원에 등록된 컨설팅 기관 Pool에서 컨설팅기관을 섭외하여 매칭 하여야 함

○ (구비서류) 총괄기업이 통합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시스템을 통해 신청기업, 컨설팅기관의 서류를 취합하여 제출

| 서류 종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신청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| 컨설팅기관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1. 컨설팅 신청서<br>【별지 제1호 서식】              | 온라인 SEIS 작성<br>(별도 파일첨부 ×)   | 해당 없음 |
| 2. 신청기업 컨설팅 수요 기술서<br>【별지 제2호 서식】      | 필수<br>(참여기업 공동으로<br>작성하여 1부) | 해당 없음 |
| 3. 참여기업 명단<br>【별지 제3호 서식】              | 필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해당 없음 |
| 4. 수행계획서<br>【별지 제4호 서식】                | 필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
| 5. 사업비 산출내역서<br>【별지 제5호 서식】            | 필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
| 6.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<br>【별지 제6-1호, 제6-2호 서식】 | 필수<br>(참여기업 전체)              | 필수    |

| 서류 종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신청기업            | 컨설팅기관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|
| 7.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<br>【별지 제7-1호, 제7-2호 서식】 | 필수<br>(참여기업 전체) | 필수    |
| 8.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<br>사업자등록증 1부            | 필수<br>(참여기업 전체) | 해당 없음 |
| 9. 최근 2개년도 결산재무제표<br>(최근 결산 완료 회계연도부터) | 필수<br>(총괄기업)    | 해당 없음 |

※ 1개 이상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압축(zip)하여 SEIS의 해당 칸에 첨부

※ 구비서류에 대한 추가 설명은 [참고 5]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3 협업활성화 지원 컨설팅 신청 시 유의사항

#### □ 컨설팅 수행기관 선정 및 수행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

- 컨설턴트 1일 기준 단가에는 인건비, 운영비, 여비, VAT를 포함한 각종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이 모두 포함된 금액임
- 컨설팅 과제책임자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하는 책임자로, 컨설팅 기관 소속의 상근 컨설턴트(2등급 이상)가 담당하여야 함
- 컨설팅 수행은 수진기업에서의 현장활동이 전체 투입일수의 70%이상이어야 하며, 2명 이상의 컨설턴트가 동일 일자에 동일 내용으로 컨설팅을 수행한 경우, 최상위 등급 컨설턴트를 제외한 그 외 컨설턴트 MD는 불인정(단, 수진기업과 협의를 통해 현장 투입일의 50%(전체 투입일 35%)까지 비대면 화상 컨설팅 활용 가능)
  - 컨설팅 과제 준비, 연대협력 사업의 관리 등 행정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전체 투입일 수의 30% 이내에서 내근 투입을 편성할 것
- 컨설팅기관은 참여컨설턴트가 사업연도 내 컨설팅 지원사업의 투입 일수가 총 120일을 초과할 수 없음을 고려하여 투입인력 등을 조정하여야 함
- 참여 컨설턴트는 1일 1개 수진기업에 대해서만 컨설팅을 수행하여야 함
- 과제책임자는 과제별 총 투입일수의 최소 30% 이상 참여하여야 함.
- 비상근 컨설턴트는 과제별 총 투입일수의 40% 이내에서 인정
- 참여 컨설턴트는 본 사업에 선정된 이후 진흥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단, 아래의 경우 면제 가능
  - 진흥원 컨설팅 사업 수행실적이 3건 이상인 컨설팅기관 중 평가 결과가 A등급 이상인 기관 소속 컨설턴트(신규 등록 컨설턴트 제외)
  - 직전년도 컨설팅 수행결과 종합 점수가 상위 10%인 컨설팅기관 소속 컨설턴트(신규 등록 컨설턴트 제외)
- 교육자료 개발, 매뉴얼 개발, 타 지원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, 단순 유통채널 확보, 기초컨설팅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내용 등 일부 주제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. 다만, 평가위원회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
- 사업비 산출내역서 작성 시 반드시 공고된 “사업비 관리기준”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, 선정 이후 또는 사업 참여 중 관리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 진흥원에서 수정·보완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함

## □ 지원제외 대상

- 신청 컨설팅 내용이 이미 지원받은 컨설팅 내용과 유사·중복으로 판명된 경우
- 당해연도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에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수진기업
- 당해연도 컨설팅기관으로 수행 중인 경우
- 사업 운영지침 제6조에 따른 지원 한도를 초과한 기업(최대 5회)
- 변호사, 노무사, 회계사, 변리사, 지도사 등 전문자격자 또는 컨설팅기관이 관련 용역 서비스 계약을 기 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하거나 활용하는 경우
- 신청시 동 사업을 수행 중인 신청기업
- 신청기업 및 컨설팅기관(컨설턴트)이 허위로 수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
- 컨설팅 기간 내에 지정 기한이 종료되는 예비사회적기업
- 타 정부지원사업에 유사 또는 동일한 내용의 컨설팅을 지원받은 경우
-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
  - 가) 기업의 부도, 화의, 법정관리중인 기업
  - 나)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
  - 다)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, 휴·폐업중인 기업
  - 라)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
  - 마) 단, 위 각목에 해당하더라도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배제하지 아니함

## 4

### 협업활성회 지원 컨설팅 수진기업(지원대상) 선정 절차

## □ 선정 일정

- 신청한 컨설팅 주제 및 과업에 대하여 신청기업과 컨설팅기관의 책임자가 참여하는 최종평가(PT평가)를 거쳐 수진기업 선정 실시
  - ※ 공고 종료 후 1주 내외에 PT평가 실시 예정(구체적 내용 신청기업 개별 추가 안내)
  - ※ 단, 지원규모에 따라 최종 PT평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서면평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PT평가 일정 조정 시 별도 추가 안내 예정
  - ※ 최종 PT평가는 온라인 진행을 원칙으로 하며, 구체적 안내 별도 공지
- (결과발표) 심사 결과는 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발표
- (유의사항) 평가 시 사회적기업(총괄책임자)과 컨설팅기관(과제책임자)이 공동으로 배석하여야 하며, 부득이한 경우 총괄책임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참석하여 발표
  - 총괄기업의 담당자 이외 참여기업의 담당자도 참석 권고
  - ※ 선정평가 시 사회적기업의 대표(또는 지정한 대리인)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한 경우와 발표를 하지 않은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## □ 선정 방법

- (최종선정) 평가위원회는 당해 연도 지원예산 규모 및 신청기업 수 등을 고려하여 종합 평점(최종평가 점수) 고득점 순위에 따라 수진기업(지원 대상)을 선정함
  - 최종 선정 과정에서 평가위원회 의결에 따라 컨설팅 내용 및 기간, 투입인력 등을 고려하여 예산 규모 등이 조정될 수 있음
  - 평가위원회 의결에 따라 전체 지원 규모에 도달하지 않는 수량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추가 공고를 실시할 수 있음

## ○ 선정 기준(표)

| 평가항목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평가지표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배점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신청기업<br>(사회적<br>기업) | 목적 및<br>추진의지<br>(30) | 신청기업 간 협업 수요의 명확성             | 10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컨설팅 수요에 따른 컨설팅 목표 및 방향의 적절성   | 10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신청기업의 협업 및 컨설팅 추진의지의 확고성      | 10  |
|                     | 결과의<br>활용가능성<br>(10) | 컨설팅 사업 후 컨설팅 결과물의 활용 의지 및 가능성 | 10  |
|                     | 소 계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0  |
| 컨설팅<br>기관<br>(컨설턴트) | 수행방안<br>(25)         | 수진기업 현안에 따른 문제점 및 환경 분석의 적절성  | 10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현 수준 대비 컨설팅 이후 성과목표(KPI) 적절성  | 5 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협업의 개선, 고도화 방안 제시의 부합성 및 전문성  | 5 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컨설팅 수행 단계별 세부 진행계획의 적절성       | 5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사업관리방안<br>(15)       | 컨설턴트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역할 분담의 적절성   | 10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협업의 수행 관리 방안 및 전략의 효율성        | 5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사업예산<br>(5)          | 목표 및 계획 대비 사업예산(투입일) 산정의 적절성  | 5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사업완료<br>(15)         | 컨설팅 성과의 실현가능성과 기대효과의 구체성      | 5 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컨설팅 이후 사업연계방안 및 결과물 활용방안의 적절성 | 10  |
|                     | 소 계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0  |
| 총계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 |

### Ⅲ. 선정 이후 행정사항 및 기타 안내 [모든유형 공통]

#### 1

#### 선정 이후 행정 사항[계약 체결 및 컨설팅 수행]

##### □ 최종 수진기업 선정 이후 사업 수행 절차

##### ① 역량 강화 워크숍 참가

- 수진기업과 컨설팅기관의 책임자 대상 원활한 사업 참여를 위한 숙지 사항, 컨설팅 효과 증진(협업 역량 증진)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실시
- 원활한 협업 촉진 등 효과적인 컨설팅 효과 달성을 위한 전문 워크숍 및 사업 절차, 행정사항 관련 안내 실시 예정

##### ② 진흥원·수진기업(사회적기업)·컨설팅기관 간 수행 협약 체결

- 진흥원·수진기업(총괄기업)·컨설팅기관 간 3자 협약체결

※ 총 수행 협약기간: 2022.11.30.까지(최종평가 및 정산 등 행정절차 포함기간)

##### ③ 컨설팅 착수 및 수행

※ 컨설팅 과제 투입은 2022.11.18. 이내 완료를 원칙으로 함

##### ④ 모니터링 및 점검(진흥원, 운영지원기관)

- 지원사업 신청 시 제출한 추진 일정 및 컨설팅 계획을 바탕으로 컨설팅 진행 경과에 대한 정기·상시 점검 실시

##### ⑤ 결과보고서 등을 통한 성과 확인 및 비용 지급

- 수행일지 등 컨설팅 수행 중 진행 경과 관리, 중간·완료 평가 등을 종합하여 컨설팅 성과 확인 및 보완 실시
- 수진기업, 컨설팅기관은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 현황을 중간·완료 평가 시점 시 진흥원에 보고하고, 진흥원의 보완 요구 등에 협조하여야 함

## ⑥ 컨설팅 비용 지급

- 진흥원은 컨설팅 비용 총액 70% 이내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, 컨설팅 성과 확인 및 보완을 거쳐 잔금을 지급함

## ⑦ 자치단체, 부처별 사업 연계 정보 제공

- 컨설팅 성과를 바탕으로 연계 가능한 자치단체, 부처 사업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을 통해 컨설팅 이후 활용도 제고를 지원

## 2

## 기타 안내사항

### ☐ 추가 공고 및 지원사업 선정 규모

- 예산 현황에 따라 추가 공고 실시 가능

### ☐ 문의처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신청 및 접수 문의<br>(비소사이어티 주식회사)             | 02-2088-4503 |
| 공고 및 사업 수행 문의<br>(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업성장팀)     | 031-697-7852 |
| SEIS 접속장애, 로그인 등 오류 문의<br>(통합정보시스템 콜센터) | 1661-4006    |

### ☐ 기업 정보 및 컨설팅 사업 내용 관련 활용 안내

- 진흥원은 본 사업 참여 기업의 정보\*를 바탕으로 연계사업 정보 제공, 우수 컨설팅 성과 또는 사회적가치 사례 발굴·확산 등의 사업성과 및 제도 홍보에 활용할 수 있음

\* 사회적기업 및 컨설팅기관의 사업 개요, 컨설팅 과제 성과 등

※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「(예비)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지침」을 준용하며, 공고사항 및 지침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수진기업 및 컨설팅기관에 있음

## 참고 1

## 2022년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개요

| 유형    |        | 표준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자율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속성장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공동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협업활성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지원 내용 |        | 경영현안 해결 및 경제적·사회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표준화된 컨설팅 제공               | 경영·기술 전 분야의 심화된 경영과제와 현안 문제 해결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동종·유사 업종 또는 지역 공동의 경영 현안 해결지원 | 연대와 협력을 통한 사회적기업 공동의 성장 전략 구축지원 |
| 선정 방식 | 주제     | 분야별 지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수요자 선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컨설팅 기관 | 분야별 컨설턴트 매칭<br>※ 수행사 1개소 사전 선정                         | 수요자 선택<br>(진흥원 Pool에 등록된 컨설팅기관, 협업활성화의 경우 사회적경제조직 및 사회적경제 유관기관 등 우대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프로세스   | 컨설팅기관 선정→사전진단→자문검토회의(최종평가/매칭)→선정→개별 컨설팅                | 사전상담→컨설팅기관 매칭(자율매칭/사전진단-매칭 中 선택)→최종평가→선정→개별(공동)컨설팅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선정 심사  | 사전진단을 바탕으로 최종평가 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컨설팅주제-컨설팅기관-컨설팅계획을 바탕으로 최종평가 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지원 범위 |        | 1 ~ 6백만원 내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한없음<br>(협업활성화: 컨설팅 비용+공동사업 추진 실행비용 지원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지원 한도 |        | - 총 5회(연간 1회 지원 제한)<br>- 예비사회적기업은 연 1,000만원 이내로 지원금 지급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기업 부담 |        | - 신청(계약)금액에 따라 금액 구간별 10~40%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       | 총사업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최대 기업 부담금액                    | 산출방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       | 500만원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~40 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| 컨설팅 계약금액 × 10%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       | 500만원 ~ 1,500만원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5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| {50만원+(500만원 초과금액×20%)}         |
|       |        | 1,500만원 ~ 2,500만원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5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| {250만원+(1,500만원 초과금액×30%)}      |
|       |        | 2,500만원 초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95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| {550만원 + (2,500만원 초과금액×40%)}    |

※ 협업활성화 지원 컨설팅 수진기업 모집은 별도 공고 예정

## 참고 2-1

## 자율형(지속성장/공동형) 컨설팅 추진 절차

| 단 계                  | 수행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컨설팅기관 등록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등록 신청(컨설팅기관→진흥원)</li> <li>○ 컨설팅기관의 자격 및 요건 검토 및 등록 승인(진흥원)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신청 접수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전상담 실시(신청기업→지원기관)</li> <li>○ 컨설팅기관 매칭지원(지원기관→신청기업)</li> <li>○ 수행계획서 작성(신청기업과 컨설팅기관의 협의)</li> <li>○ 경영컨설팅 신청(신청기업→진흥원)</li> </ul>         |
| 최종평가<br>(대면, PT평가)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컨설팅 수행계획 발표(신청기업, 컨설팅기관)</li> <li>○ 컨설팅기관의 역량과 수행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증(진흥원)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지원대상 선정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종합 평가 점수를 산정(대면평가 점수+우대가점)하여 최종 지원대상 선정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계약 체결 및<br>사업착수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진흥원, 수진기업, 컨설팅기관 3자 계약 체결</li> <li>○ 착수금 지급(수진기업→컨설팅기관) 확인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중간 보고 및<br>중간(수시) 점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수행일마다 수행일지 작성(컨설팅기관)</li> <li>○ 중간보고서 제출(컨설팅기관)</li> <li>○ 현장 모니터링 및 중간 점검 실시(진흥원)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완료 점검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완료보고서 제출(컨설팅기관)</li> <li>○ 완료보고서, 수행일지 등을 근거로 완료점검 실시(진흥원)</li> <li>○ 만족도 조사(수진기업)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사업비 지급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업비 지급 통보(진흥원→컨설팅기관)</li> <li>○ 사업비 지급 신청 및 지급(컨설팅기관, 진흥원)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평 가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컨설팅 평가 등급 산정 및 공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완료점검 점수(70%)+만족도 점수(30%)</li> </ul> </li> <li>○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과공유대회 개최</li> </ul> |

## 참고 2-2

## 협업활성화 지원 컨설팅 추진 절차

| 단 계               | 수행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컨설팅기관 등록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등록 신청(컨설팅기관→진흥원)</li> <li>○ 컨설팅기관의 자격 및 요건 검토 및 등록 승인(진흥원, 지원기관)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↓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신청 접수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전상담 실시(신청기업→진흥원)</li> <li>○ 컨설팅기관 매칭지원(진흥원, 지원기관)</li> <li>○ 수행계획서 작성(신청기업과 컨설팅기관의 협의)</li> <li>○ 경영컨설팅 신청(신청기업→진흥원)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↓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선정평가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컨설팅 수행계획 발표(신청기업, 컨설팅기관)</li> <li>○ 컨설팅기관의 역량과 수행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증(진흥원)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↓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지원대상 선정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 선정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↓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계약 체결 및 전략공유워크숍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진흥원, 수진기업, 컨설팅기관 3자 계약 체결</li> <li>○ 협업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공유 워크숍지원 (컨설팅기관, 수진기업, 진흥원)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↓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사업 착수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착수금 지급(수진기업 → 컨설팅기관) 확인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↓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중간 보고 및 중간(수시) 점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수행일마다 수행일지 작성(컨설팅기관)</li> <li>○ 중간보고서 제출(컨설팅기관)</li> <li>○ 현장 모니터링 및 중간 점검 실시(진흥원)</li> <li>○ 중간만족도 조사(수진기업)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↓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완료 점검 및 만족도 조사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완료보고서 제출(컨설팅기관)</li> <li>○ 완료보고서, 수행일지 등을 근거로 완료점검 실시(진흥원, 지원기관)</li> <li>○ 최종만족도 조사(수진기업)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↓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사업비 지급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업비 지급 통보(진흥원→컨설팅기관)</li> <li>○ 사업비 지급 신청 및 지급(컨설팅기관, 진흥원)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↓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상호평가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컨설팅 참여 기업·기관별 상호평가 시행 (컨설팅기관, 수진기업)</li> <li>○ 컨설팅 평가 등급 산정 및 공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완료점검 점수(70%)+만족도 점수(30%)</li> </ul> </li> <li>○ 우수사례 발굴</li> </ul> |

### 참고 3-1

### 자율형(지속성장/공동형) 컨설팅 수진기업 선정평가표

#### (예비)사회적기업 전문컨설팅 지원사업(자율형) 선정 평가표

|       |          |      |      |
|-------|----------|------|------|
| 신청기업명 |          |      |      |
| 평 가 일 | 20 . . . | 평가위원 | (서명) |

| 평가구분                | 평가항목                 | 평 가 지 표                       | 평점 |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|
| 신청기업<br>(사회적<br>기업) | 목적 및<br>추진의지<br>(30) | 신청기업의 컨설팅 수요의 명확성             |    | / 10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컨설팅 수요에 따른 컨설팅 목표 및 방향의 적절성   |    | / 10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대표자(총괄책임자)의 컨설팅 추진의지의 확고성     |    | / 10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결과의<br>활용가능성<br>(10) | 컨설팅 사업 후 컨설팅 결과물의 활용 의지 및 가능성 |    | / 10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소 계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0 / 40점 |
| 컨설팅<br>기관<br>(컨설턴트) | 수행방안<br>(25)         | 수진기업 현안에 따른 문제점 및 환경 분석의 적절성  |    | / 10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현 수준 대비 컨설팅 이후 성과목표(KPI) 적절성  |    | / 5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개선방향 및 컨설팅 방법론 제시의 부합성 및 전문성  |    | / 5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컨설팅 수행 단계별 세부 진행계획의 적절성       |    | / 5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사업관리방안<br>(15)       | 컨설턴트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역할 분담의 적절성   |    | / 10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컨설팅 수행 관리 방안 및 전략의 효율성        |    | / 5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사업예산<br>(5)          | 목표 및 계획 대비 사업예산(투입일) 산정의 적절성  |    | / 5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사업완료<br>(15)         | 컨설팅 성과의 실현가능성과 기대효과의 구체성      |    | / 5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컨설팅 이후 사업연계방안 및 결과물 활용방안의 적절성 |    | / 10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소 계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0 / 60점 |
| 가점사항<br>(공동형은 미적용)  |                      | (진흥원에서 증빙서류 확인 후 가점사항 집계)     |    | / 5     |
| 합 계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/ 100   |
| 평가의견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|

## 참고 3-2

## 협업활성화 지원 컨설팅 수진기업 선정 평가표

### (예비)사회적기업 협업활성화 지원 컨설팅 선정 평가표
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|
| 신청기업명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|
| 평 가 일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20 . . .                      | 평가위원  | (서명)    |
| 평가구분                | 평가항목                 | 평 가 지 표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평점      |
| 신청기업<br>(사회적<br>기업) | 목적 및<br>추진의지<br>(30) | 신청기업 간 협업 수요의 명확성             |       | / 10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컨설팅 수요에 따른 컨설팅 목표 및 방향의 적절성   |       | / 10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신청기업의 협업 및 컨설팅 추진의지의 확고성      |       | / 10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결과의<br>활용가능성<br>(10) | 컨설팅 사업 후 컨설팅 결과물의 활용 의지 및 가능성 |       | / 10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소 계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0 / 40점 |
| 컨설팅<br>기관<br>(컨설턴트) | 수행방안<br>(25)         | 수진기업 현안에 따른 문제점 및 환경 분석의 적절성  |       | / 10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현 수준 대비 컨설팅 이후 성과목표(KPI) 적절성  |       | / 5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협업의 개선, 고도화 방안 제시의 부합성 및 전문성  |       | / 5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컨설팅 수행 단계별 세부 진행계획의 적절성       |       | / 5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사업관리방안<br>(15)       | 컨설턴트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역할 분담의 적절성   |       | / 10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컨설팅 수행 관리 방안 및 전략의 효율성        |       | / 5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사업예산<br>(5)          | 목표 및 계획 대비 사업예산(투입일) 산정의 적절성  |       | / 5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사업완료<br>(15)         | 컨설팅 성과의 실현가능성과 기대효과의 구체성      |       | / 5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컨설팅 이후 사업연계방안 및 결과물 활용방안의 적절성 |       | / 10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소 계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0 / 60점 |
| 합 계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/ 100 |         |
| 평가의견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|

## 참고 4

## 컨설턴트 등급 및 기준

### □ 학력 및 경력기준

- 컨설팅 수행이력의 증빙 기준은 최초 학사학위 취득일 이후의 컨설팅 기간을 정수단위로 산정한다.

| 등급 | 학력 및 경력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단가<br>(VAT포함)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1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</li> <li>•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</li> <li>•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</li> </ul> | 774,000       |
| 2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</li> <li>•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</li> <li>•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</li> </ul>  | 629,000       |
| 3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박사학위를 가진 자</li> <li>•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</li> <li>•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84,000       |

\* (예시) “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자”의 경우, 박사학위 취득 사실과 학사학위 수여일 이후 6년 이상의 해당분야의 컨설팅 수행이력이 있으면 인정

### □ 자격 및 경력기준

| 등급 | 자격 및 경험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단가<br>(VAT포함)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1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변호사, 회계사, 변리사, 노무사, 기술사, 세무사, 법무사 자격증 또는 경영지도사, 기술지도사 등록증을 보유한 자로서, 6년 이상 컨설팅을 수행한 자</li> </ul> | 774,000       |
| 2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변호사, 회계사, 변리사, 노무사, 기술사, 세무사, 법무사 자격증 또는 경영지도사, 기술지도사 등록증을 보유한 자로서, 3년 이상 컨설팅을 수행한 자</li> </ul> | 629,000       |
| 3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회계사, 세무사, 노무사, 변호사, 법무사, 변리사, 기술사 자격증 또는 경영지도사, 기술지도사 등록증을 보유한 자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| 484,000       |

### □ 기타 경험 및 경력기준

| 등급 | 자격 및 경험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단가<br>(VAT포함)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1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없음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74,000       |
| 2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인사·노무, 세무·회계 등 관련 경력 또는 직위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고령자</li> <li>• 컨설팅 능력이 있는 교수(전임강사 이상), 정부출연(연) 재직자(선임급 이상), 컨설팅 해당 분야 경력보유자(경력 10년 이상), 국공립연구기관 연구원(연구경력 5년 이상)인 자</li> <li>• 사회적기업 대표(경영책임자 포함)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최근 3년간 해당 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</li> <li>•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유관기관 근무 경력이 5년 이상이며 최근 3년간 해당 분야의 컨설팅을 수행한 자</li> </ul> | 629,000       |
| 3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컨설팅 해당 분야 경력보유자(경력 5년 이상)</li> <li>• 사회적기업 대표(경영책임자 포함)로 2년 이상 근무한 자</li> <li>•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유관기관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84,000       |

## 참고 5

## 통합정보시스템(SEIS) 구비서류 제출 방법

### □ <전문컨설팅 신청·조회 화면> 첨부파일 제출 방법

전문컨설팅 신청·조회

1

첨부파일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|
| 전문 컨설팅 수행계획서 (표준형의 경우 신청서) | 테스트.pdf | 파일선택 | 파일삭제 | PDF 보기 |
|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               | 테스트.pdf | 파일선택 | 파일삭제 | PDF 보기 |
|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              | 테스트.pdf | 파일선택 | 파일삭제 | PDF 보기 |
|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        | 테스트.pdf | 파일선택 | 파일삭제 | PDF 보기 |
| 최근 3개년도 결산 재무제표            | 테스트.pdf | 파일선택 | 파일삭제 | PDF 보기 |
| 우대 가점 관련 증빙서류              |         | 파일선택 | 파일삭제 | PDF 보기 |
| 전문컨설팅(공동형) 참여기업 명단         |         | 파일선택 | 파일삭제 | PDF 보기 |
| 그 외 제출서류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파일선택 | 파일삭제 | PDF 보기 |

| 통합정보시스템(SEIS) 메뉴명  | 제출 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전문 컨설팅 수행계획서       | 【별지 제4호】 서식 1부 첨부(ppt 파일 권장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       | 【별지 제5-1, 5-2호】 신청기업, 컨설팅기관 각각 작성하여 압축(zip) 첨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      | 【별지 제6-1, 6-2호】 신청기업, 컨설팅기관 참여 인원별 각각 작성하여 압축(zip) 첨부                        |
|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| “신청기업”의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등록증 사본 첨부(pdf 권장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최근 2개년도 결산 재무제표    | “신청기업”의 최근 2개년도 결산 재무제표 사본 첨부(최근 결산이 완료된 해부터 3개년)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우대 가점 관련 증빙서류      | 해당 사항 있을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압축(zip)하여 첨부 (【별지 제3호】 과제 발굴 확인서 해당 사항 있는 기업은 해당 칸에 첨부) |
| 전문컨설팅(공동형) 참여기업 명단 | 【별지 제7호】 작성 후 첨부(hwp 파일 권장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그 외 제출서류           | 【별지 제2호】 수요기술서 작성 후 첨부(hwp 권장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※ 총괄책임자, 과제책임자 정보 작성 시 기업 대표번호가 아닌 지원사업 대응 책임자, 담당자 개인의 연락처 및 이메일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총괄책임자: 신청기업 관리자급 PM 인원 / 과제책임자: 컨설팅기관의 과제 책임 컨설턴트

□ 우대 가점사항 증빙 방법(지속성장형에 한함)

| 점수 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첨부 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점 |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금융 지원 신청 종이거나 지원 받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금융 지원사업의 명칭이나 지원대상, 신청 기업명이 확인되는 사업 참여 협약서, 선정 공고 또는 안내 내용, 제출한 신청서 등                 |
|    | 직전년도 매출액 15억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1 회계연도 재무제표 등 직전년도의 매출을 확인 가능한 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현재 유급근로자 수 30인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등 신청시점 근로자 현황 확인 가능한 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사회적기업 인증 1년 이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등 인증 일자를 확인 가능한 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점 | 직전년도 사회적기업 자율경영 공시(기본·확장공시) 참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체크 시 진흥원에서 집계 (SEIS의 경영공시 신청 목록 화면 캡처 권고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광역 및 지자체 사회적경제 협력기관 포상, 공모에 선정 되는 등 우수성 인정 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관명 및 신청기업명이 확인되는 상패, 공고문, 선정 안내문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자율형 전문컨설팅 수진 이력이 없는 신청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체크 시 진흥원에서 집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공고하는 SVI 측정 참여 이력이 있거나 참여 중인 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체크 시 진흥원에서 집계 (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명의 공고의 SVI 측정기업 모집에 참여한 기업에 한함)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점 | 진흥원 혹은 사회적경제 협력 기관에서 주관한 공신력 있는 진단을 거쳐 발굴된 컨설팅 과제를 보유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기업 | 【별지 제3호 서식】을 작성하여 당시 교육/컨설팅/멘토링을 주관했던 협력기관의 확인을 받아 사본 파일 첨부 (협력기관 직인을 포함하여 pdf 사본 권고) |

## 참고 6

## 사전진단 신청서 양식

※ 아래 표는 신청 시 작성 항목 안내 용도로, 실제 진단을 신청하실 때에는 “사전진단 공고” 화면으로 이동하시어 첨부된 서식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| 2022년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사전진단 신청서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컨설팅<br>필요분야<br>(3개 이내<br>선택) | <input type="checkbox"/> 경영전략 <input type="checkbox"/> 기업문화 및 조직 혁신 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계획 <input type="checkbox"/> 자원개발(지자체·기업·NGO연계)<br><input type="checkbox"/> 홍보/마케팅/영업전략 <input type="checkbox"/> 시장개척/판로개척 <input type="checkbox"/> 유통/물류시스템 구축 <input type="checkbox"/> 연구개발<br><input type="checkbox"/> 기술개발/기술도입 <input type="checkbox"/> 생산현장·품질관리 <input type="checkbox"/> 생산성향상/원가절감 <input type="checkbox"/> 디자인/ 브랜드 관리<br><input type="checkbox"/> 직무분석 및 성과평가 <input type="checkbox"/> 인사 노무 전략 <input type="checkbox"/> 구조조정 <input type="checkbox"/> 자금계획 및 조달<br><input type="checkbox"/> 소셜 임팩트 고도화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_____ (구체적으로 기재) |  |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진단 요청<br>내용                  | 신청기업의 최근 경영 현안 및 컨설팅 필요 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신청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업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인증 구분   | 예비 | <input type="checkbox"/> 인증 <input type="checkbox"/>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인증/지정번호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업태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대표자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연락처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홈페이지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총괄책임자                        |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직 위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무실 전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휴대전화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e-mai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팩 스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(예비)사회적기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운영 지침의 규정에 따라 “2022년 (예비)사회적기업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사전진단”에 신청하며,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인 경우 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.

2022 년 월 일

신청기업 대표자(또는 총괄책임자) :

(기관직인)

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

## 1. 유관사업 참여 경험

① 진흥원 주관 컨설팅\*, 교육, 지원사업 참여 실적(최근 5년간)

| 연도 | 사업명 | 주요내용 | 지원금액(천원) |
|----|-----|------|----------|
|    |     |      |          |
|    |     |      |          |
|    |     |      |          |

② 지자체, 정부, 타 기관 지원 사업(컨설팅 포함) 참여 실적(최근 5년간)

| 연도 | 지원기관(부처/지자체/기관) | 사업명 | 지원내용 | 지원금액(천원) |
|----|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|----------|
|    |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|          |
|    |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|          |
|    |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|          |

## 2. 신청기업의 상세 컨설팅 수요

| 가. 컨설팅 필요성 및 신청 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<p>○ 컨설팅 필요성</p> <p>-</p> <p>○ 컨설팅 희망 내용</p> <p>-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나. 컨설팅 기대효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<p>○ 컨설팅 기대 성과목표</p> <p>-</p> <p>○ 컨설팅 활용 계획</p> <p>-</p> <p>○ 예상 사업비 규모</p>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자부담금 예상 한도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_____천원 ~ _____천원 |
| <p>(예상 한도액은 컨설팅 추진 시 기업이 부담하고자 하는 기업부담금 최대 범위이며, 전체 컨설팅 금액 대비 자부담금의 평균 비율은 10~15% 내외임)</p> |                   |

※ 사전진단 신청 공고 바로가기(상세보기 클릭) [상세보기 \(socialenterprise.or.kr\)](http://socialenterprise.or.kr)